



한국게임산업진흥원
Korea Game Industry Agency

kotira

동남아 게임시장 동향 특별보고서

[태국]

[주요 내용]

- 태국 투자 정보
- 태국 현지 법인 설립 등

특별 2호 - 2007년 2분기

▶ 목 차 ◀

I. 투자 여건

II. 투자유치 제도

III. 법인 설립

IV. 연락사무소 설립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진출 시 투자권의 보호에 유의
태국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개방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서 외국인투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을 컨설팅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 규정을 확인하면서 설립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인 단독투자가 제한된 업종의 경우(서비스업 등) 현지인 명의로 기업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불법적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지 종업원 명의로 기업을 설립하였다가 종업원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투자기업에 해를 끼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 태국정부의 인센티브제도 적극 활용
태국 정부는 투자청(BOI)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BOI를 통한 투자 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법인 설립 후에도 각종 행정적인 절차와 부가세 환급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BOI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국 투자청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대 핵심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농산물 가공, 패션사업, IT 및 고부가 특새산업 등이다. 외국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할 경우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신속한 법인설립 및 투자승인을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태국 투자청에서 투자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태국 행정절차의 후진성으로 법인설립 및 투자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제출서류 준비, 현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채용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 투자 여건

1. 투자 환경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 사회주의 국가 시장 진입에 우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며 인구 6,600만명(2006년말)으로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 아세안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2006년 기준 약 3,179달러)으로 내수판매 확대도 가능. 특히 기존 외국인투자자들이 수출산업에 집중되어 일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세율 생활용품의 경우 투자를 통한 시장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태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및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시장개방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태국 국민들이 외국투자기업로부터 습득한 기술을 자기 기술화하여 경쟁상대로 부각되는 경향이 적어 기업운영 환경이 여타 아세안 국가보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음. 최근 들어, 2006년 9월 쿠데타 등 계속되는 정치 불안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감소세에 있는 상태임

II. 투자유치 제도

1.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태국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세계 지원 등 BOI의 각종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태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BOI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BOI에 보고해야 함
- 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태국 산업의 질 및 생산 기준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천만 바트(약 2억5천만 원)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ISO9000등 유사한 국제인증을 받아야 함
- 수출 및 국산품 이용 규정 철회
 - 국제 교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협정에 위반되는 생산품의 수출 비율 및 원료의 국산품 이용 규정은 철회되었음
- 지역의 균등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투자 우대
 - 저소득 및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특별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형 투자 중시
 - 최소 1백만 바트(2천5백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중소형 투자도 BOI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음
- 투자 장려 분야에 대한 우선권 부여
 - 농업 및 농업생산품, 고도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공익 및 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기타 정부지정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BOI의 투자 인센티브 부여 기준

- 태국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투자지역을 3개 지역

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방콕을 중심으로 방콕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투자 인센티브가 적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음. ZoneⅡ의 경우 관세율이 10% 이상인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50% 감면, 법인세 3년간 면제, 산업공단이나 권장 산업지역에 입주할 경우 5년까지 연장,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지역구분	해당지역	인센티브 내용
Zone I (방콕 인근 6개 지역)	Bangkok, Nakhon Pathom, Nonta Buri, Pathum Thani, Samut Prakan, Samut Sakh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이 10% 이상인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50% 감면 ▶ 산업공단이나 권장 산업 지역에 위치할 경우, 3년간 법인세 면제(자본투자 1천만 바트 이상일 경우 사업개시 후 2년내 ISO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만일 획득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1년간 면제
ZoneⅡ (Zone I을 제외한 12개 중부지역)	Angthong, Ayutthaya, Chachoengsao, Chonburi, Kanchanaburi, Nakhon Nayok, Ratchaburi, Samut Songkhram, Saraburi, Suphanburi, Phuket, Ray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이 10% 이상인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50% 감면 ▶ 법인세 3년간 면제, 산업공단이나 권장 산업 지역 입주할 경우 5년까지 연장(자본투자 1천만 바트 이상일 경우 사업 개시 후 2년내 ISO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획득치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1년간 면제
ZoneⅢ	Zone I, ZoneⅡ를 제외한 58개 나머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법인세 8년간 면제(자본투자 1천만 바트 이상일 경우 사업 개시 후 2년내 ISO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획득치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5년간 면제 ▶ 법인세 면제기간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 ▶ 최초 판매일 이후 10년 동안 용수, 전력 및

		운송비용을 과세대상 수익에서 공제(이중 공제) ▶ 최초 판매일 이후 10년 동안 순수익의 25% 까지 공장 인프라 설비 건설비용을 공제
--	--	--

■ 투자인센티브 부여 기준

- 투자액 5억 바트(125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토지대금, 운영자금 제외)
 - 부가가치가 매출액의 20% 이상일 것(단,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농산물 가공, 기타 BOI 특별승인사업은 예외)
 - 신규 사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등록자본금의 1/3 이하일 것(단, 사업 확장의 경우는 사안별 심사)
 - 현대적인 생산방식 및 신품 기계를 사용할 것(단, 중고기계 사용의 경우 공인기관 또는 투자청 승인 필요)
 - 환경보호 설비(시스템)를 갖출 것

- 투자액 5억 바트(125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토지대금, 운영자금 제외)
 - 5억 바트 이하 투자에 적용되는 원칙을 모두 적용하며, 사업계획서(feasibility study)를 BOI에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외국인기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은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Paper Company를 세우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태국에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구분	내용	해당 업종
Category A	투자금지 업종,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	신문방송업, 쌀 경작, 조정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내 수산업, 태국 식물 채취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매매
Category B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정부(내각)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나, 미국인의 경우 태국·미국 간 상호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시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능	<p><그룹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p><그룹 2>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p><그룹 3>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Category C	원칙적으로 금지됨.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기업 허가(Alien Business Licence)를 취득할 경우에만 가능. 주로 외국인기업에 비해 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서비스업,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국내무역,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도매업(점포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경영 제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규정에 명시된 것 제외)

2.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진행 개요

- 2007년 1월 9일 태국 상무부가 내각에 개정안 제출
- 2007년 4월 10일 내각 개정안 수정 승인
- 2007년 4월 25일부터 태국 의회 심의 예정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배경

- 태국 외국인투자법(Foreign Business Act B.E. 1999)은 1999년 태국의 특정 산업 보호 목적으로 제정 및 발효되어 지난 7년 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변화 및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태국 내부의 지적이 있어 왔음
- 한편, 기존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사업과 같이 국가안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금지 혹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2006년 말, 민주당은 상무부로 하여금 구 탁신 총리의 친코퍼레이션 주식 매각과 관련된 5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해 줄 것을 탄원 (탁신가의 친코퍼레이션 주식매각은 작년 군부 쿠데타의 실질적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었음)
- 민주당 주장 및 상무부 조사결과, 이 5개 법인이 "NOMINEE"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은 없는 허수아비 주주 혹은 명의 대여자)를 편법적인 투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적으로 조사를 착수한 16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 이에 태국 상무부는 정식으로 2007년 1월 9일 이와 관련된 투자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

■ 개정안 주요내용

- 기존에는 지분률 기준으로만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결권을 포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

을 정의

- 예를 들어, 종전 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전혀 없더라도 태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태국기업으로 정의되어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기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등 당초 태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특정사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편법 혹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업종에 기 투자한 외국기업은 사업에 커다란 제약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
- 위법의 경우 벌칙 강화
 -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및 징역 부과
- 기타, 금융, 서비스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제한업종 리스트에서 제외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사안	현행	개정안
'Foreign' 정의	지분율만 고려	지분율과 함께 의결권도 고려
위반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OR/AND 100,000~1,000,000바트 벌금	3년 이하 징역 OR/AND 500,000~5,000,000바트 벌금
투자 제한 업종	소매업, 기타소매업, 금융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리스트에 서 제외

■ 투자법 개정관련 태국 정부 가이드라인

- 기존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이번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외국기업

- 태국 정부 승인 없이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90일 이내 상무부에 신고하고, 1년 내에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배구조(지분율, 의결권 등) 조정

- 50% 미만 지분율 조건은 만족하지만, 50% 미만 의결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상무부에 신고하고, 2년 내에 지배구조 조정

-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지분율은 90일 이내, 의결권은 1년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며, 이 카테고리의 사업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지배구조 조정 없이 계속 사업 영위 가능

- 기타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어 발효되기 전까지 법 이해가 명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할 것이라고 함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관련 외국기업 반응

- 독일·태국 상공회의소 파울 스트룅크 회장: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태국 경제발전의 위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질책

- 일본·태국 상공회의소의 반노 테쯔지 회장: 많은 일본계 회사들이 외국기업법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태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

- 피터 반 하렌 태국 주재 외국기업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엄격하고 어렵게 만들수록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외국기업법 개정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7

년 1월과 2월의 외국인투자 신청 액수는 2006년 동기대비 23%나 하락했으며, 쿠데타가 발생한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개월간의 투자 신청 역시 1년 전에 비해 4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

■ 태국 진출 우리기업 반응

- 현재 150~200여개로 추정되는 우리 업체의 경우 대부분 태국 투자청의 승인을 이미 받았거나 제조업이 70% 이상으로 개정법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행 및 요식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업체의 경우 일부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III.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및 기업등록 (비공개 주식회사의 경우)

- 법인의 등록은 상무부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 Ministry of Commerce)에서 회사명 사용에 대한 허가부터 받아야 하며, 현재 사용 중인 회사명은 등록이 허가되지 않음
- 다음으로 상무부 상업등기소에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제출해야 하며, 정관에는 승인된 회사명, 사업장 주소, 사업 목적, 등록자본, 발기인 7인의 성명, 주식 수, 주식가치 등이 명기되어야 함
- 등록 자본의 최소 요건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자본금이 요구됨. 참고로 1인 주재원의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은 2백만 바트임
- 정관이 등록되면 투자자는 주주들을 초청,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며, 비용 집행을 인준 받고 경영자와 감사를 선임함
- 총회에서 선임된 경영자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에 대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최초 모집 자금은 최소한 전체의 25% 이상이어야 함. 경영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서명과 함께 기업등록을 하여야

합

- 법인 설립 이후 60일 이내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세무 등록 (Tax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국세청은 Tax ID Card를 발급함. 연 60만 바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의 경우는 60만 바트의 매상을 달성한 지 30일 이내에 부가세 납부를 위한 등록을 해야 함

<투자기업 형태>

▶ 파트너십(Patnership)

- 비등록 파트너십(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 LimitedCompanies

태국에선 Limited Companies는 2개의 형태로 구분됨. 하나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이며, 다른 하나는 상장회사법(Public Company Act)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Limited Public Companies)임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주식회사(Limited Public Company)

▶ 합작투자(Joint Venture)

태국 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는 합작투자기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합작투자기업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의 그룹이 협약에 의해 하나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정의됨. 합작투자기업의 소득은 내국세법(Revenue Code)에 따라 단독 법인체로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됨

▶ 지사(BranchofForeignCompany)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OfficeofForeignCompany)

■ 노동 허가(Work Permit)

- 태국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자 기업의 경우 노동 허가는 BOI의 One Stop Service Center에서 쉽게 받을 수 있음

- 1년 비자 연장과 노동 허가 요건

- 신청자는 non-immigration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함
- 1인당 투자금액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함

- 2년 비자 연장과 노동 허가 요건

- 신청자는 non-immigration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함
- 1인당 투자금액 1천만 바트 이상이어야 함

■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 장려 혜택 신청

- BOI의 투자 장려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사항은 아님. BOI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하지만 BOI에 반기 및 매년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 및 BOI가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함

■ BOI 투자 장려 혜택 신청 절차

- 신청

- BOI에서 발행한 투자 장려 수혜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투자청에 제출하고 1부는 신청자가 보관함. 신청서는 개인명의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함

- 승인 후 후속조치

- BOI는 투자승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투자승인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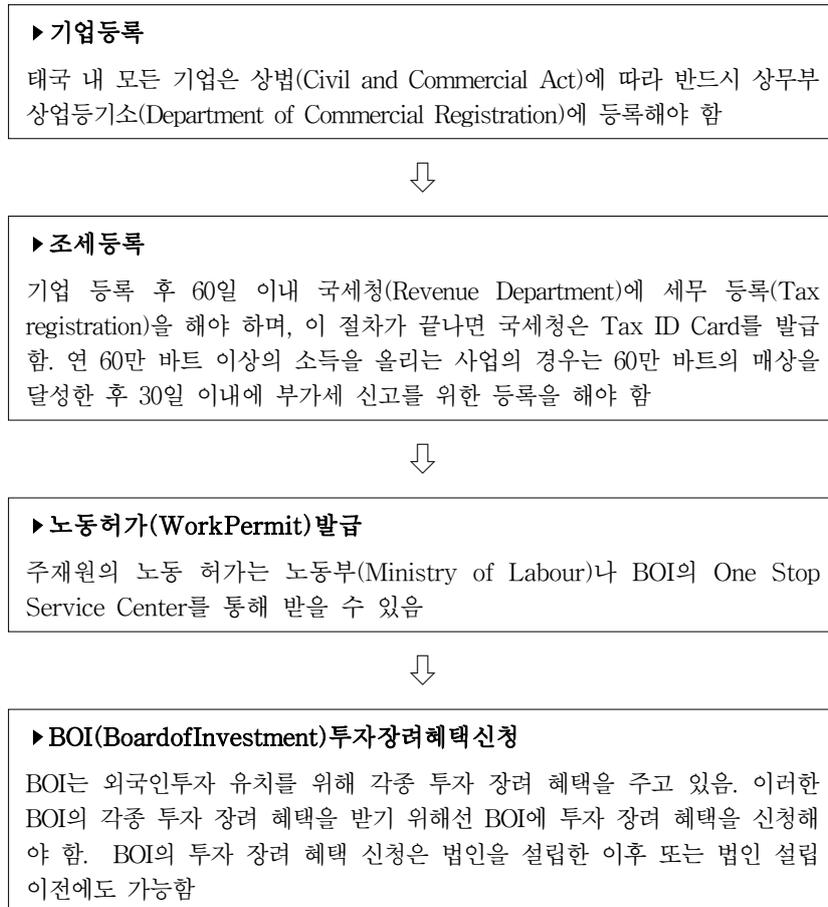
- 투자승인 통보서에 투자승인 조건 및 투자 장려 혜택 내용 포함
 - 투자승인 통보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투자 장려 혜택에 대한 수리 여부를 BOI에 보고
 - BOI로부터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제반 사항을 보고
 - BOI로부터의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는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신청자가 6개월 이내 제반 사항에 대해 BOI에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4개월 동안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
 - 모든 서류가 충족되면 BOI는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를 발급(신청자는 증명서 내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함)
-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 이후 조치
 -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해당 기업은 공장 건설 및 기계 구입 등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증빙 서류를 BOI에 제출해야 함
 - 24개월 이내 기계 수입(기한 내 기계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 부여)
 - 30개월 이내 공장 설립
 - 개업 예정일 15일 이전에 공장 실사를 위해 BOI에 개업을 보고해야 하며, 모든 것이 충족되면 BOI는 공식적으로 개업을 허가
 - 해당기업은 매 6개월마다 BOI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에 보고하고, 매년 Office of Board of Investment에 연간 업무보고를 해야 함
 - 공장 가동이 2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BOI에 서면 보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BOI 감사를 통해 당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운영을 발견할 경우 BOI는 공식적으로 주의를 줄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 장려 혜택을 취소할 수 있음

<법인설립 허가기관>

투자허가기관	권한
Thai embassy in abroad	노동 허가증 신청 전에 비이민 비자발급
Ministry of Labor (in Thailand)	노동 허가증 발급
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 Ministry of Commerce	기업 등록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조세 등록

IV.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진출 절차



■ 지사(Branch Office)

-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음. 지사는 태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회계장부를 꼭 제출해야 함
- 지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태국 정부에 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임. 외국인기업의 지사가 태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있을 경우 태국의 국세청(Revenue Dep.)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 태국정부로부터 외국인 지사로 외국인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4년 이내에 사업실행자본 5백만 바트 이상의 외환이 태국에 반입되어야 함. 지사는 5년 단위로 사업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실행 자본만 반입된다면 갱신이 가능

<지사의 실행 자본 반입 스케줄>

-
- 1차년도 첫 6개월간: 1백만 바트
 - 1차년도 나머지 6개월간: 1백만 바트
 - 2차년도: 1백만 바트
 - 3차년도: 1백만 바트
 - 4차년도: 1백만 바트
-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y)

- 외국 기업은 비수익(non-trading)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해 태국 내에서 물건을 소싱하고 반입되는 물건을 검사하며 새로운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업무를 함
- 사무소 설치를 위한 자본 반입 규정은 지사와 같음
-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에 보고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지 공급원 조사, 본사 사무소에서 구매된 상품의 품질 및 수량 통제 및 검사, 본사에서 현지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본사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분석,

현지 사업개발 및 활동에 관한 본사 보고 등으로 제한됨

<사무소 설립 허가기관>

허가기관	권한
Thai embassy in abroad	노동 허가증 신청 전 비이민 비자 발급
Ministry of Labor (in Thailand)	노동 허가증 발급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	태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류 제출

※ 법인세

-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태국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세금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십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기업,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되며, 일반 형사 및 상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음
- 외국기업의 지사는 태국 내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법인 및 파트너십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이 규정되며, 태국의 내국세 코드에 의해서 부과됨

■ 과세대상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5년간 순손실의 이전이 허용
- 채고는 반드시 시장가격 가치 또는 비용가치 중 낮은 것으로 계산
- 고용주의 연금 또는 규정에 따른 기부는 비용으로 공제 대상
- 기증 및 기부금에 대한 공제금액은 총 순이익의 4%까지 가능

- 공공이익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는 2%까지 가능
- 교육 및 스포츠 단체에 대한 기부는 2%까지 허용
- 회계기간 종료일 순이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비용(예를 들어 순이익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보너스 등)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주식회사 및 파트너십 자산의 가치하락은 비용으로 간주되며, 연간 자산 평가 절하율은 법 규정에 따라 5년부터 20년까지 다양
- 접대 및 대표자의 비용은 회계기간 종료일 기준 매출액 또는 불입자본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제 대상이 됨

매출또는불입자본(바트)	공제허용비율(%)
최초 5,000,000	2.0
이후 15,000,000	1.0
이후 30,000,000	0.5
50,000,000 이상	0.3

- 자본획득은 일반적인 과세수입으로 취급
- 환율변동에 따른 비실현 수입 및 손실은 과세대상 순익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계정하거나 또는 자본화하여 상각할 수 있음
- 태국 주식회사는 여타 주식회사로부터 획득한 배당수입의 50%는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며, 이러한 배당수입이 상장기업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배당제공기업이 배당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배당 받는 기업이 배당기업 주식 25%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음

- 내국세법에 따라 세금관련 벌금, 과징금 및 벌과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율
 - 모든 기업, 법적 파트너십, 외국기업 지사: 30%
 - 2002년 1월 1일부터 불입, 등록자본금이 5백만 바트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데, 순이익규모가 1백만 바트까지는 20%만 부과되고 1백만~3백만 바트까지는 25%, 그리고 순이익이 3백만 바트를 넘을 때는 정상 세율인 30%를 내야 함
- 순이익에 부과되는 일반 법인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음
 - 국제 운송사업 분야로 외국인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가 부과됨
 - 승객운송의 경우 태국 내에서 운송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수수료 및 기타 이익에 대해 비용 공제 전 3%를 부과함
 - 화물 운송의 경우 태국 내외를 불문하고 태국으로의 화물 운송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수수료 및 기타 이익에 대해 비용 공제 전 3%를 부과함
- 태국 재무부 훈령에 의해 공공자선단체 또는 연구소로 인정된 기관 및 단체는 모든 종류의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됨
 - 이외 태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수입에 대해 경비 공제전 수입의 종류에 따라 2~10%의 법인세가 부과됨
 - 그러나 회원사의 회비, 선물 또는 기부의 방식으로 받은 금전 또는 자

산은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함

- 기업은 각 회계기간 종료일 15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 신설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회계기간은 12개월이며, 납세신고는 회계감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기업들은 연간 법인세의 50%를 회계기간 8개월째 마지막 날 반기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기 납세신고액이 실제 납부액의 25% 이상 미납될 경우 차액에 대해 20%의 벌금을 부과함. 한편 상장기업, 상업은행, 금융기관 또는 재무부 내국세국 규정에서 명기한 특정 법인체는 6개월의 회계기간 동안의 실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납세신고는 내국세국장이 승인한 회계사가 검토한 재정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국가 개요

- 국 명: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 면 적: 514천km²(한반도의 2.3배)
- 수 도: 방콕(Bangkok)
- 주요도시: 방콕, 치앙마이, Nakhon Ratchasima, Nakorn
Srihammarat, Ubon Ratchathani, Udon Thani
- 인 구: 6,600만명(2006년말 기준)
- 민족구성: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11%)
- 언 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2%), 기타(2%)
-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 2006년 9월 19일 군사쿠데타 이후 과도정부
구성상태
- 화폐단위: 바트(Baht, THB로 표기)
- 환 율: THB 34.45 / US\$ 1 (2007.6월 기준)
- 기 후: 열대몬순기후
(건기: 11월~2월, 우기: 7월~10월,
열대기후: 3월~6월)
- 시 차: GMT + 7 (한국보다 2시간 늦음)